

**「주문자상표부착 수입식품등의 제조·가공업체  
위생점검 기준」 제정고시(안) 입안예고**

-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9- 170호, 2009. 6. 19 -

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9년 2월 6일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입자에 대한 위생 및 품질관리 의무화의 일환으로 「주문자상표부착(OEM)식품」등을 수입·판매하는 영업자의 수출국 제조·가공업체 위생 점검의무를 신설하는 「식품위생법」개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위생 점검에 필요한 점검기준과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「주문자상표부착 수입식품등의 제조·가공업체 위생점검 기준」 제정고시(안)을 입안 예고하였습니다.

**□ 주요내용**

가. 위생점검실시기관이 주문자상표부착(OEM) 식품등을 생산하는 수출국 제조·가공업체를 점검함에 있어 세부 점검기준을 마련하여 객관성 확보(제2조제1항)

- (1) 주문자상표부착식품등을 수입·판매하는 영업자에게 위생관리 및 품질관리를 의무화하여 안전한 수입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수출국 제조·가공업체의 위생점검시 객관적인 점검

기준을 제공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.

- (2) 원료, 시설, 공정, 완제품 관리, 소비자 정보 및 훈련의 세부 점검기준 마련
- (3) 수출국 제조업체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함으로써 객관성 확보 및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

※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(www.kfda.go.kr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**「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(안) 입안예고**

-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9- 171호, 2009. 6. 22 -

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첨가물에 대한 안전관리 확보를 위하여 식품첨가물의 성분규격 중 납, 카드뮴 등 유해중금속, 잔류용매, 시안화합물, 다환방향족탄화수소 등 유해물질과 대장균 등 미생물 규격을 신설·강화하고자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(안)을 입안예고 하였습니다.